제 1장 총칙

제 1조 목 적

이 규정은 현대제철 주식회사(이하 "회사"라 한다)가 거래를 위하여 협력회사 (이하 "협력사"라 한다)의 등록 및 운용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,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'위반행위의 사전예방과 회사의협력사 등록 및 운용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알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 2조 용어의 정의

"협력업체"라 함은 당사의 제조·수리·시공 또는 용역 수행 등의 대상업체로 예정되거나, 거래중인 사업자로서 하도급법에서 규정하는 수급 사업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수탁사업자를 포함한다.

- ① "협력업체 풀"이라 함은 당사가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등록하여 관리·운용하는 협력업체 그룹을 의미한다.
- ② "협력업체 선정"이라 함은 당사의 협력업체 풀에 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.
- ③ "협력업체 운용"이라 함은 당사가 협력업체로 선정·등록된 업체에 대한 거래 개시기회 부여, 등록 취소 등 협력업체 풀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.

제 3조 협력업체 선정 기준, 절차 및 결과의 공개

- ① 협력업체 선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협력업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30일전 또는 등록(갱신 등록 포함) 심사 개시 30일전에 전자매체(당사의 웹사이트,이하 같음) 등에 15일 이상 공개한다.
- ② 협력업체 선정 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갱신 등록 대상업체에 대하여 45일전에 그사항을 서면(전자문서 포함, 이하 같음)으로 개별 통지한다.
- ③ 협력업체를 선정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개별 통지하며, 미 선정업체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서면 통지한다.
- ④ 당사는 협력업체 선정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,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없도록 노력한다
- ⑤ 협력업체 선정 기준은 위탁할 거래 내용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, 세부 선정 기준 별반영 비중을 적절히 배분한다.

구분	내용	비고
정당한	- 관련 법규에 의한 해당 전문면호 보유 여부	거래 내용에 따라 추가 가능
선정기준	-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대상 업체의 재무건전성 여부	
적용 예시	- 기타 객관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	
	- 퇴직임직원, 학연, 지연, 친인척 등과 관련 있는 업체인지 여부	
부당한	등을 선정기준으로 하는 경우	
선정기준	- 경쟁업체와의 거래 또는 중복 협력업체 등록을 이유로 불이익을	
적용 예시	주는 경우	
	- 기타 사회통념상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	

- ⑥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신청 및 접수 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한다.
- ⑦ 당사의 귀책 사유로 협력업체 선정에서 제외되었다고 판단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미 선정

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한다.

- ⑧ 협력업체로 선정·등록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개시를 위한 입찰참가기회 등이 제한되거나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.
- ⑨ 당사는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.

제 2장 협력사의 신규등록 관련사항

제 4조 등록신청

- ① 당사의 협력업체 등록 희망업체는 당사 해당 구매부서(팀)의 승인을 득한 후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 - 1. 신규 등록 신청서
 - 2. 업체 실태 조사서
 - 3. 재무 제표(등록 신청일 직전년도 기준, 공인기관의 공인을 필한 것) 단, 신설 업체의 경우 해당업체의 중장기 투자 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다.
- ② 당사 해당 구매부서(팀)은 협력업체의 관련 자료를 평가 후 거래 코드 부여 및 전산등록 업무를 추진한다.
- ③ 등록업체의 신규 코드가 부여되면 15일 이내에 등록업체와의 거래 개시 내용을 협력업체 및 당사 업무 유관부서(팀)에 서면으로 통지한다.

제 5조 업체평가

① 평가기준 평가자는 부문별 평가서에 의하여 평가를 실시한다.

구분	평가 내용	비고
제조	1. 공통평가: 경영일반(15점), 재무구조(20점), 신용평가(15점)	
	2. 업종평가: 기업규모(15점), 업종능력(35점)	
건설	1. 공통평가: 경영일반(15점), 재무구조(20점), 신용평가(15점)	가점 5점
	2. 업종평가: 기업규모(15점), 업종능력(35점)	
기타	1. 공통평가: 경영일반(20점), 재무구조(20점), 신용평가(20점)	
	2. 업종평가: 기업규모(20점), 업종능력(20점)	

② 재무평가는 신용평가사의 최근 평가결과를 활용한다. 단 신용평가사 미평가업체의 경우는 신규로 평가를 받는다.

제 6조 평가 결과 종합

해당 구매팀장은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평가보고서를 작성한다. 종합평가결과 당사거래 가능점수는 70점이상 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

제 7조 등록 품의 및 승인

해당 구매팀장은 해당 협력사가 거래자격을 획득한 경우, 거래 필요 시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신규등록 품의를 진행한다.

제 3장 협력사의 변경등록 관련 사항

제 8조 변동사항 통보

- ① 회사의 협력사는 상호 변경, 대표자 변동, 소재지 이전 등 등록내용의 변동사항이 발생시해당 구매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- ② 대표자 변동시 상속, 단순 대표권위임 등에 따른 대표자변동을 제외한 지분매각으로 인한 대표자변경, 제 3자 양도에 따른 대표자 변동시는 회사와의 지속거래 여부 결정을 위해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구매팀으로 변경등록을 의뢰하여야 한다.
 - 1. 신임 대표자 인적사항 및 소유권 이전사유
 - 2. 기업 투자계획

이 경우, 협력사 평가는 이전 협력사의 협력사 종합평가 점수를 승계하며 기본거래계약서 및 제반 서류는 다시 체결 및 제출하여야 한다. 단, 법인등록번호 변경 등, 법적으로 별도 협력사로 변경된 경우 신규등록으로 간주, 신규등록 절차를 따른다

제 4장 협력사의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

제 9 거래등록업체의 계약해제 및 해지

당사는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를 공개함과 동시에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도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한다.

- ① 계약의 해제·해지 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,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와 최고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되, 해제·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한다.
- ②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.
 - 1.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거나,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 취소, 영업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
 - 2. 상대방이 부도, 제3자에 대한 강제집행, 파산, 화의 개시 및 회사정리절차의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
 - 3. 상대방이 해산,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,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 계약 또는 개별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
- ③ 최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,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·해지 할 수 있다.
 - 1.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, 당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상대방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
 - 2.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 내에 납품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3. 상대방의 기술, 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 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

제 10조 협력사의 부당등록 취소 및 이의 제기

- ① 회사와 거래중인 협력사가 아래 경우에 해당되어 등록 취소될 경우 부당한 등록취소로 볼 수 있다.
 - 1. 납품단가 인하요청 등 회사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한 비협조를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
 - 2. 경쟁사업자의 협력업체로 등록된 것을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
 - 3. 협력사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미발주 또는 미위탁함으로써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 (다만,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거래개시 경쟁에서 탈락함으로써 상당기간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등록 취소 가능)
- 4. 협력사 임직원 인사에 대한 회사의 지시에 불응함을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 ② 협력업체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하고, 해당 사업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, 당사의 귀책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재등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 11조 가이드 라인 미 준수시

회사는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 12조 문서의 기록 및 관리

본 규칙에 관련된 문서의 기록 및 관리는 관련 회사 표준에 따른다.